

우리나라의 계량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는 계량법체제는 하나의 법률안에 과학적 기본 단위에 관한 부분과 법적규제와 단속의 대상인 상거래용 계량, 검정에 관한 모순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先進制度의 맹목적 추종서 벗어나야”

우리나라 계량법은 건국 당시의 법체계 생성 과정의 태동기를 지나 사회변화에 따른 수차례 부분적 개정을 보았으나 이제는 선진 계량체계를 향한 제정비가 절실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의 모든 제도와 법률의 개편은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불가피하며 최선의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실리를 명분으로 호도해서도 안되고 기득권을 이론이나 정책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도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판단기준은 적어도 계량과 관련된 모든 사회계층의 국민이 안고 있는 계량의 문제의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중이 요구하는 선진계량의 기준을 알아내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계량법체계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계량법을 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본문에서 계량조사결과 밝혀진 문제점을 중심으로 업계에서 건의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 동 진

(韓國표준연구소政策研究室
조사팀장·선임연구원)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의 바로미터인 GNP 규모에 있어 1953년의 13억 5천불에서 1987년에는 1천억불을 넘어 올해에는 세계 15위권의 1천5백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인당 GNP가 35년 동안 무려 54배가 늘어남 지금 경제관련 법조문인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조항이 헌법에 명문화 된지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이렇다할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후속정책이 뒤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정책지 체현상에서 국가표준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

계량법체계의 비교

우리나라 계량법의 구조와 특성

우리나라 계량법의 구성은 총 7장 52조 부칙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종속된 법률체계로는 계량법 시행령이 전문 42조, 계량기 구조령이 전문 150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공부령에 의

한 계량법 시행규칙과 검정규칙, 계량기 검정 및 교정 검사 수수료 규정이 있다.

현행 계량법 구조를 요약하면 제1장 총칙편으로 국가표준과 관련된 한국표준 연구소와 계량 및 계량단위의 정의, 기본단위의 현시, 원기보관과 유도단위, 보조계량단위, 특수단위, 약호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2장은 계량기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작수리업의 허가, 계량기의 형식승인, 판매업, 계량증명업의 등록 허가 등의 수수료, 계량기의 처분, 감독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3장은 검정을 받을 의무, 양도 등의 제한, 사용의 제한, 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특수용기의 사용, 실량 또는 품질의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4장은 검정으로서 검정의 주체, 검정규칙, 검정수수료 및 비용, 검정의 합격조건, 검정의 유효기간, 검정증인, 계량기의 비교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은 단속으로서 검사의 주체, 정기검사의 합격조건, 정기검사증인, 수시검사, 사법경찰관,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 부정계량기의 소인, 파쇄,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6장은 벌칙으로서 무허가 제작 또는 수리, 부정계량기 사용, 무등록판매 및 계량증명, 정기검사 불응, 비법정계량단위, 검사거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은 보칙으로서 계량기의 가격사정, 계열화 또는 전문화, 계량의 자치관리, 계량기사 등의 고용, 권한의 위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계량법의 특성은 일본의 계량법과 거의 비슷한 구조적 특성으로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법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규제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직 총칙에서만이 과학기술의 단위계를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나머지는 주로 일상 거래용

계량기의 형식 승인과 부정계량기의 단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계량법시행령 제7조에 적용되고 있는 계량기는 일반상거래용에 국한되어 있을 뿐 표준기를 포함한 고정밀기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총칙의 과학기술에 관한 단위계의 법체계적 영역에 일정선의 한계점을 노정함으로써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에 부응토록 구분하고 있는 서독의 「단위법」과 「검정법」의 계량법체계중 「단위법」구실을 하고 있어야 할 총칙편이 현 법체계적 구성에 있어 재검토 될 분야로서 내용구성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계량법은 부정계량행위의 단속을 위한 강제적 의무조항과 공권력 발동을 위한 권위주의적 법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조직 기구를 통한 자율적 계량행정의 합리화를 기하지 못한채 반복되는 부정계량기의 남발과 계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권리의무 조항의 대부분이 종속된 법령으로써 시행령이나 법규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정밀정확도의 지도관리상 그 위임에 따른 업무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국의 계량법체계의 특성

서독 계량법의 특성 : 서독의 계량관계의 법체계를 보면 측정단위에 관한 법률과 계량 및 검정제도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측정단위에 관한 법률(Gesetzüber Einheiten im Meßwesen)은 「단위법」(Einheiten Gesetz)이라고 약칭되며, 계량 및 검정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Mess Und Eichwesen)은 「계량법」, 「검정법」등으로 불리지만 통상적으로 「검정법」(Eichgesetz)으로 구분된다.

서독 계량법체계는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달리 측정단위에 관한 법을 「단위법」으로 정하고, 계량기의 검정과 형식 등의 규제에 관한 법은 「검정법」으로 각각 구분 명시된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 글은 한국표준연구소가 발행한 「측정표준」 제11권 제4호에서 전재한 것임. …(편집자 註)

서독 계량법체계의 구분된 이유는 국가표준 체계의 확립을 위한 대내적인 면과 EEC 가맹국의 교역증진에 큰 비중을 두고서 어디까지나 과학성과 합리성이 요구되는 대상을 「단위법」으로 정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검정법」의 의미는 계량기의 검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적, 사법적 요구대상으로 하였기에 「검정법」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단위에 관한 법률: 「단위법」의 주요 조문 내용은 법정단위, 기본량과 기본단위, 질량과 에너지에 관한 원자물리적 단위, 연방물리기술원의 임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 및 검정제도에 관한 법률: 검정법의 주요내용은 검정, 포장과 용기, 공용저울과 계량공무원, 직무와 권한, 비용과 조사권, 벌칙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계량법의 특성: 일본의 계량법은 13장 전문 243조와 부칙 40조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법이 7장 74조와 종속된 법령은 기준기 검사령, 계량기 검정 검사령, 계량법시행령 계량단위령, 계량법관계 수수료령, 규칙으로서는 기준기 검사규칙, 계량기 검정 검사규칙, 계량법시행규칙, 계량단위규칙, 계량법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계량법의 특징으로는 우리나라의 계량법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의 계기는 거래에 사용되는 일반 상거래용의 계기로 한하였고 특정의 기준기나 원기급 및 고정밀기기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량기 사업에 자유로운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등록제를 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연구기관을 이용한 계량기의 지정검사기관의 활용과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이익신청 및 청구를 받고 있다는 점을 특색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계량의식과 그 실태

선진계량제도와 방향제시를 위한 우리나라 국민의 계량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실태조사는 그 조사대상을 계량기 제작, 판매, 수리업체(2278개 업소)와 교정검사기관 및 교정자율업소(101개 업소), 계량관련 행정기관(265개 기관)에 대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국 일원에 걸쳐 200여개 기관 및 업체 관계자와 개별상담을 통한 방문조사실사를 실시 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정확한 조사대상의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선정기준으로 대상선정이 아닌 계량사업과 관련된 일부 특정 사회계층으로서 제작, 판매, 수리, 계량증명업소와 계량단속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별로 고루한 조사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사용자 계층인 가정주부와 학생 및 근로자, 농민계층은 본 조사에서 제외 되었다.

국민의식 조사로 보기에는 그 객관성에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본 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량의식에 가장 가깝게 접하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조사의 동질성으로 제안된 공통의견으로서 신뢰도를 더 크게 평가할 수 있다.

본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현행 계량법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체 응답자중 3.6%만이 현행대로 좋다고 응답하였을 뿐 나머지 61.5%는 현행법이 비합리적임, 19.3%는 전면개편으로, 7.2%는 신규 삽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현행 계량법의 개편 수정을 요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면, 소비자 보호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이 38.6%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계측기술지원 강화로서 26.5%, 허가 및 검정기준의 완화 13.3%, 불법계기 단속이 9.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성분포는 계량법 제정 당시의 사회

경제규모와 지금의 크게 달라진 규모의 변화에서 앞으로 2000년대 국제경제의 대응전략의 안목으로 경제관련 법규인 계량법의 나아갈 방향으로서, 과학기술 발전과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관심도가 높게 집중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50.6%가 선진국에 비하여 품질이 70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1.7%는 70 이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국산계기의 질적 수준이 크게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이 낮음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계량법에서 「국산계기의 육성책을 마련해야 된다」가 73.5%로서 그 방안으로 측정기술 교육훈련 실시와 계측전문 공업단지 조성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미래지향적 계량정책건의로서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다.

계량제도에 관한 인식도 분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작수리업의 허가는 보완(59.0%)
- 판매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제도와 보완(42.2%), 등록기준 강화(30.1%)
- 검정제도의 보완(57.8%), 검정 기준강화(32.5%), 검정 주체의 민간기관 지정확대(54.2%)
- 검정기관수 부족 및 인력부족(43.4%), 검정 수수료 재조정(31.3%)
- 실량표시, 품질표시제도 보완(19.3%)
- 정기검사제도의 보완(50.6%)
- 무허가 제작 수리의 벌칙강화(56.6%), 수리업의 자유화와 교정기관의 성적서 첨부

이러한 인식도 비중에서 구체적인 세부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맺는말

한나라의 계량제도와 그에 따른 법률체계는 그 나라의 시대적 문화배경과 경제기반의 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계량법 체계는 계량법이라는 하나의 법률 안에 과학적 기본 단위에 관한 부분과 검정에 관한 부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상 모순된 일본의 경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의 계량법체계는 단위와 검정부문을 구분하여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이 계량법체계의 발전방향은 계량의 자치관리제도로의 자율화 추세에서 자기규제의 관리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우리의 법의 개편방향이 맹목적 선진제도의 추종에서 벗어나 경제, 과학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그 운용에 편리한 계량관계의 이상적 제도로서 한국적 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리기 위하여 우리는 앞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깊이 고찰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건의와 개선 방향이 수용 및 실현 검토 될 때 비로소 국민이 바라는 한국적 모델의 선진 계량법과 제도로서 정립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1> 우리나라 계량법 과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요약)

계량법 조문	현행 계량법의 과제	개선에 대한 업계 건의
1. 총 칙 (제1조 -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단위가 복잡, 단이함 • 단위의 비법정단위 혼용 사용 • 계량분야 및 단위 변화에 대응 미비 • 계량의 정의 및 계량단위와 관련단위의 현시, 원기의 보완 • 우리나라는 현재 계량공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계량협회의 단체조직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제편성, 서술식으로 → 홍보필요 → 계량법에서 단위와 고정밀기기는 회피하고 국제도량형국의 정의에 따른 한국표준연구소 역할 확대 → 원기보관은 공업진흥청장을 한국표준연구소장으로 개편해야 함. → 계량의 생활화를 기하고, 민간주도로 전환할 수 있는 계량공업협회 설치 필요

계량법 조문	현행계량법의 과제	개선에 대한 업계 건의
<p>2.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계량의 안전확보 (제13조~제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업체 과다 - 저질상품 범람 • 설비명과 규격이 구체적이지 못함 • 장기사용으로 인한 불량계기 과다 • 판매등록기준 약화로 부정계량기 범람 • 택시미터기의 수명 제한 • 판매질서 문란 • 교정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대한 사용량도 제한이 없음(제19조) • 특수용기 사용 및 실량 표시상품 신뢰성이 없음 • 주유기의 경우 10~20년 전의 기계사용으로 소비자 피해 예상 • 87.8.31 시행령 개정에 의해 질량계기의 대저울이 계량기에서 삭제됨 • 양복, 양장점에서 대자 사용 • 제작수리업의 사업장 불명시 • 필요 외의 분동시설로 효율도 미흡 • 허가권은 상급기관에 있으므로 관할기관의 권리가 안되고 있음 • 계량기 사용빈도가 높은 상거래 업체의 계량오차 판단시설이 없음 • 실량표시 상품 중 프로판가스 허용오차 과다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 수도미터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6년으로서 가정용 수도미터기의 소유는 관계관서장의 소유로 기간 경과 기물교체에 대처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미터기 검정실적이 전무하며 가정용 수도미터기의 잦은 고장으로 사용자의 불편과 경제손실이 야기됨 • 부피계의 되나 말은 사회통념상 허용된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허가기준 강화 → 구체적 기록명시, 공장면적, 최소시설기준제정 필요 → 계기사용연한제 바람직함 → 종전대로 허가제도로 복귀 요망 → 차량교체시 미터기도함께 교체토록 → 허가제가 바람직함. → 유효기간 경과시기에 대한 양도 또는 대여제한 항목 신설 → 계량사업의 준법성, 신뢰성이 철저히 요망되며 계량업무 종사자 교육필요 → 계기의 사용연한제 신설필요 → 고추시장의 거래행위의 90% 이상이 대저울 사용으로 기존 대저울에 대한 마른 고추 계량시 간편히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없음 → 대자 사용에 대한 법령 개선 요망 → 제작수리업소는 최소 33㎡ 이상 → 분동시설 기준의 현실화 제작 수리업 20kg 분동 5톤으로 → 수사관리 감독권은 관할 관청에 위임 되어야 함. → 계량기 사용빈도가 높은 업체는 자체검사 시설을 구비토록 하여 항상 사용자로 하여금 계량오차를 확인토록 해야 함. → 허용오차를 1/100로 개정해야 함. → 수도미터기의 검정은 반드시 각 지방공업시험소로 이관하여 가정용수도미터기의 검정효율화를 기하여야 함. → 부피계의 제작을 허용하되 구성재료를 목재아닌 플라스틱으로 하고 정사각형이 아닌 원통형 및 직사각형으로 제작하여 부피계에 대한 인식 필요
<p>3. 검정 (제24조~제29조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 89호(경정검사를 받을 의무) 중 유효기간의 모순 • 교정검사 사항이 미흡 • 교정 주체기관의 능력 부족 • 검정의 합격조건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류만 합격조건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개선 → 구체적으로 삽입되어야 → 능력극대화 → 예외 규정 필요, 기차의 반복성 구간별 정확도 기준 필요

계량법 조문	현행 계량법의 과제	개선에 대한 업계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의 현실성 결요 • 합격한 계량기의 오차가 너무 심함 • 기준기의 유효기간이 합리성 없음 • 생산공정의 계기의 정밀도와 관련된 계기의 정기검사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 일치 → 검정의 신뢰성 강화 → 기간을 재조정(너무 짧다) → 생산공정의 사용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필요
<p>4. 단속 (제30조~제3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산열량계의 고정된 시설에 대한 교정 검서로 인한 경비의 낭비 • 병원의 혈압계와 교통순찰용 속도계의 대한 정기검사에서 제외됨 • 길이계중 택시미터와 용달미터가 정기 정기검사 대상이 되며 용달의 경우 기본 주행요금에 1800원 이므로 실제 요금대로 거래가 되지 못함 • 단속 미흡 • 상거래용, 비치용 계량기의 구분이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한 개선책 필요 → 병원에서 인체의 생명의 측정과 관련된 계기와 주행자와 잦은 시비가 발생하는 교통순찰용 속도계는 반드시 정기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함. → 길이계는 택시미터만 검사대상으로하고 용달의 경우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요금 인가 등이 타당함. → 부정계량기 단속에 대한 사법경찰권 강화 → 상거래용은 기록을 유지하고 정기대상 기물은 상거래용에 한하여 실시토록 요망
<p>5. 벌 칙 (제38조~제4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이 약함 • 벌칙이 너무 관대함 • 처벌의 경직성 • 실행(징역) 또는 벌금만을 규정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의 고발에 따른 경제적 손실초래 • 적발은 고발과 직결된 행정으로 단속에 역작용되며 고발등 법적처리 이전에 경미한 위반자에 선도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상거래 및 산업의 근간이 계량이므로 고의적 위반시 벌칙 강화 →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과징금 부과료 전환 요망 → 법 제39조 - 현행 및 과태료(영업정지) → 법 제40조 - 현행 및 과태료 병행 → 법 제41조 - 현행 및 과태료와 행정제재(영업정지) → 법 제42조 - 영업정지 및 과태료 행정 제재
<p>6. 기타 계량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소홀 - 소속기관 불분명 • 계량표준유지 보급 유지 및 계량종사자 자질 부족 • 계량법 개정시 대폭적 의견 수렴이 안된 상태에서 개정되므로 불편함. • 계량제측기 제작업체의 영세성 • 계량관련 교육기술 부족 • 미터법 사용 인식 부족 • 계량기사의 활용 미비 • 질적인 면에서 크게 낙후되었음 • 계량기사 자격증 대여 빈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공업협회 부활 → 계량담당 교육강화 →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작업 요망 → 대기업 참여기회 부여 → 정기, 정규직 교육훈련 주관기관필요 → 미터법 사용 홍보 → 계량기사 자격증 소지자우대 및 제도 활성화 → 양질의 제품생산의 정책 필요 → 수리업체의 상당수가 자격증 대여 실정임. 개선요망